

정관

[제정 : 1979. 11. 5, 최종개정 : 2024. 3. 26]

제 1 장 총칙

제 1 조(상호) 이 회사는 "롯데쇼핑주식회사"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LOTTE SHOPPING CO., LTD. 라 표기한다.

제 2 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2. 의류, 피혁류, 완구류(완농품제외) 식품류(제과업) 및 기타 각종 일용품의 제조, 가공 및 도산매에 관한 사업
3. 각종 오락장, 식음료판매장, 체육시설, 공연장, 주차장 및 기타 서비스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관광알선, 관광도서의 출판과 판매, 토산물 판매, 사진업 환전업에 관한 사업
5. 실내장식과 광고물제작에 관한 사업
6. 부동산의 신축판매, 매매, 판매알선 및 임대업에 관한 사업
7. 수출입업에 관한 사업
8. 신용카드업
9. 문화사업
10. 의료기구 및 위생용품 판매사업
11. 용역제공에 관한 사업
12. 식품첨가물 제조 및 판매업
13. 식품가공업 및 판매업
14. 농, 수, 축산물 판매업
15. 식품소분 판매업
16. 화공약품제조 및 판매업
17. 다류제조 및 판매업
18. 유통전문 판매업
19. 과자류 제조 및 판매업
20. 조미식품 제조 및 판매업
21. 기타 식품제조 가공업 및 판매업
22. 기타 식품 판매업
23. 골판지 제조 및 가공 판매업
24. 합성수지제품 제조 및 가공 판매업

25. 지류 제조 및 가공 판매업
26. 여객자동차 터미널 사업 및 관련 부대사업 운영
27. 유기장업
28. 관광사업
29. 영화상영업, 영화제작업, 영화배급업, 영화수입업 및 부속되는 사업일체
30. 여행업
31. 원격평생교육시설운영
32. 체인사업
33. 주류중개업
34.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운영
35. 신재생에너지발전업
36. 태양광발전업
37. 석유판매업과 연료소매업
38. 주유소 및 가스충전업
39. 통신판매업
40. 전자상거래업
41. 무점포소매업
42. 식품의 수집, 저장, 보존, 배송, 포장업
43. 창고업
44. 주택건설사업
45. 전자금융업
46. 주류소매업
47. 일반음식점업
48. 위 사항에 부수되는 사업일체

제 3 조(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①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또한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출장소, 영업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4 조(공고 방법)이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lotteshoppingir.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 2 장 주식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육천만주로 한다.

제 6 조(일주의 금액)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금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이 회사는 설립 시에 일만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 8 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우선주식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제 9 조(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4 범위 내로 한다.

②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년 5% 이상으로 발행시에 이사회가 우선배당률을 정한다.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식과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④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사업연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누적된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의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⑥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보통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조건의 우선주식으로 한다.

⑦ 우선주식의 존속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 년 이내에서 발행시 이사회가 정하고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한다.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 3 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권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2 조의 혹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7 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1 조(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제 12 조(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한다.
- ④ 제 3 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 13 조(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4 조(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 월 31 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2 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채

제 15 조(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 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의 2(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주식으로 전호나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사채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

제 16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0 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 1 항 제 2 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우선주식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 개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모집 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 후 일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삭제)

제 16 조의 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17 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 12 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 4 장 주주총회

제 18 조(소집시기)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 그 밖에 법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 이를 소집한다.

제 19 조(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3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0 조(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 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 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에 2 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전 항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21 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 22 조(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 시에는 제 36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3 조(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 24 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 주마다 1 개로 한다.

제 25 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 26 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 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7 조(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8 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총회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 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주주가 제 2 항에 따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 2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정한 경우에 주주는 주주 확인절차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주주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 29 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작성)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및 이사회

제 30 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 명 이상 11 명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과반수로 하되 3 명 이상 이어야 한다.

제 31 조(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 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 382 조의 2 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32 조(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33 조(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내로 한다. 그러나 그 임기 만료일에 앞서 1 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가 열릴 경우 그 총회의 종결시에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하며,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 34 조(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 30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 30 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5 조(대표이사의 선임)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약간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 36 조(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또한, 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② 부사장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전무이사는 대표이사와 부사장을 보좌하며, 대표이사가 유고한 때는 부사장이, 부사장이 유고한 때는 전무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37 조(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3 개월에 1 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38 조(이사회 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일주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 의장은 전 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 39 조(이사회 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 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 의 출석 과 출석 이사 의 과반수 로 한다. 다만, 상법 제 397 조 의 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 398 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 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 분의 2 이상 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의 전부 또는 일부 가 직접 회의 에 출석 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 가 음성 을 동시에 송수신 하는 통신수단 에 의하여 결의 에 참가 하는 것을 허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 는 이사회 에 직접 출석 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의 결의 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 가 있는 자 는 의결권 을 행사 하지 못한다.

제 40 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 에 관하여 는 의사록 을 작성 해야 한다.

② 의사록 에는 의사 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 하는 자 와 그 반대 이유 를 기재 하고 출석 한 이사 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 하여야 한다.

제 41 조(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 의 위원회 를 둘 수 있다.

1.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원회
2. 감사 위원회
3. 경영 위원회
4. 보상 위원회
5. 기타 이사회 가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 38 조, 제 39 조 및 제 40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2 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 43 조 (삭제)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 44 조(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 41 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의 3 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 조의 11 제 3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⑥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⑦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⑧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⑨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외이사의 수가 이 조에서 정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합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5 조(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4 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제 46 조(감사위원회의 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 7 장 계산

제 47 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 월 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하며 매기말에 결산을 행한다.

제 48 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 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전 항의 각 서류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 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제 1 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①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외부감사인의 선임)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다.

제 50 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 각호와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상법상의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 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6. 차기이월이익잉여금

제 51 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이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 야 한다.

제 51 조의 2(중간배당)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법 제 462 조 3 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 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제 52 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 청구권은 5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부칙(2005년 11월 7일)

1. 이 정관은 2005년 11월 7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제 20 조 제 2 항, 제 48 조 제 3 항은 이 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 상장한 때로부터 시행하고, 제 30 조, 제 32 조, 제 34 조 제 2 항, 제 44 조, 제 45 조 및 제 46 조는 이 회사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주권을 신규 상장한 이후 최초 소집하는 정기주주총회일부터 시행한다.
2. 개정된 정관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이루어질 때까지 회사의 현 감사(들)은 상법 및 개정 전 정관에 따른 감사(들)의 권리 및 의무와 동일한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
3. 정관개정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는 제 32 조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2006년 3월 30일)

1. 이 정관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제 33 조의 규정은 이 정관 개정후 최초로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년 3월 7일)

1. 이 정관은 2008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년 3월 26일)

1. 이 정관은 201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년 3월 18일)

1.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년 3월 23일)

1. 이 정관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년 3월 21일)

1.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년 3월 24일)

1. 이 정관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2017년 3월 23일 이전에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제 15조의 2 제 1항의 개정규정 및 제 16조 1항에 따른 발행한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제 15조의 2 제 1항의 개정규정 및 제 16조 1항에 따른 발행한도는 2017년 3월 24일부터 새로이 계산한다.

부칙(2017년 8월 29일)

1. 이 정관은 2017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년 3월 29일)

1. 이 정관은 201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8조, 제 12조, 제 13조, 제 14조, 제 16조의 2 및 제 17조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구 정관(2019년 3월 29일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조, 제 12조, 제 13조, 제 14조 및 제 17조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계속 유효하게 적용한다.

부칙(2020년 3월 27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년 3월 23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년 3월 23일)

이 정관은 202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년 3월 26일)

이 정관은 2024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